

드론제도 가이드북



국토교통부
부산지방항공청



순 서

1. 드론 개요

- 가. 드론의 정의
- 나. 드론의 비행원리

2. 드론 안전관리 제도

- 가. 비행가능 공역
- 나. 비행 승인
- 다. 항공촬영(사진촬영)
- 라. 조종자 준수사항

3. 드론 관련 사업준비 절차

- 가.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절차
 - 나.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등록절차
 - 다. 안전성인증 검사, 조종자증명 요건
 - 라. 관계기관 연락처
-



1. 드론 개요

가. 드론의 정의

초경량비행장치 > 무인비행장치 > 무인동력비행장치 = 드론

관련 법령

항공안전법 제2조(정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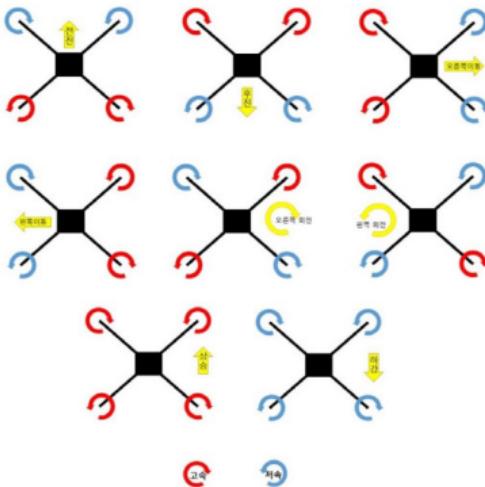
3. "초경량비행장치"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,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,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.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(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)

5. 무인비행장치 :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
가. 무인동력비행장치: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
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

나. 드론의 비행원리

4개의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회전 시 상승, 저속으로 회전 시 하강하며 진행코자 하는 방향 프로펠러의 속도를 감속시키면 기체가 그 방향으로 기울면서 진행하는 원리입니다.



2 드론 안전관리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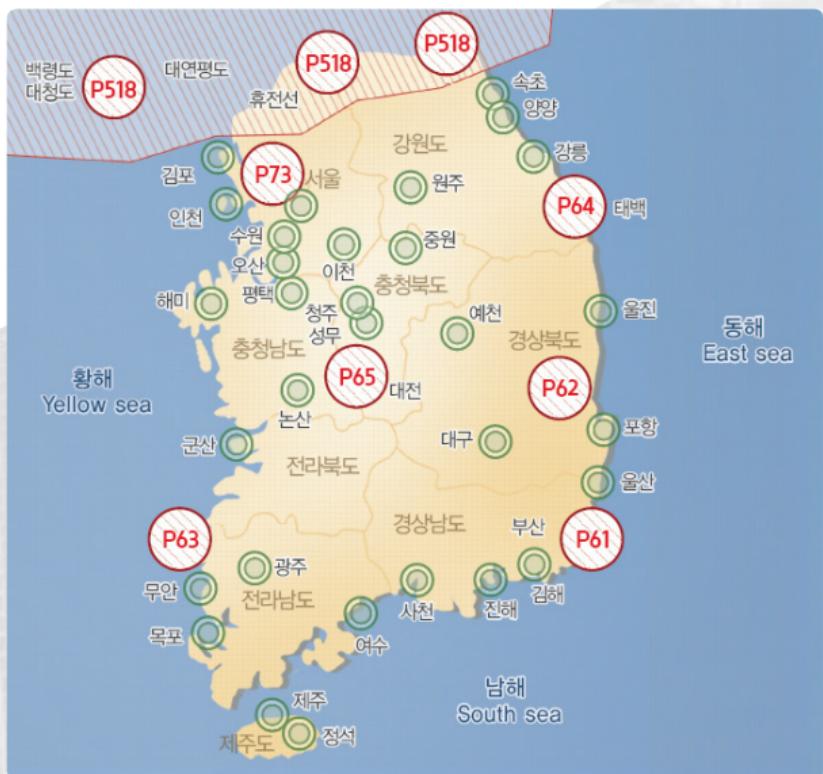
가. 비행가능공역

- ① 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.



- ②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스마트폰 앱 Ready To Fly 또는 인터넷 <http://map.vworld.kr> 활용



③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분 사항

종 류		조종자 준수사항	장치 신고	사업 등록	조종자 증명	보험 가입	음주 비행	
안전 관리 제도	12Kg 초과	사 업	O	O	O	O	O	
		비사업	O	O	X	X	O	
	12Kg 이하	사 업	O	O	O	O	O	
		비사업	O	X	X	X	O	
위반 시 처벌기준		징 역	-	6개월	1년	-	3년	
		벌 금	-	500만원	1천만원	-	3천만원	
		과태료	200만원	-	300만원	500만원		

종 류		안 전 성 인증검사	비행 승인			
			비행금지공 역	관 제 권	일반공역	
안전관리 제 도	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	O	O	O	O	
		O	O	O	O	
	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	X	O	O	X	
		X	O	O	X	
위 반 시 처벌기준		징 역	-	-	-	
		벌 금	-	200만원	200만원	
		과태료	500만원	200만원 (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)	200만원 (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)	

나. 비행승인 (인터넷 홈페이지, www.onestop.go.kr/drone 신청가능)

① 관제권

- 관제권 내 비행 신청 시 관할기관(지방청 또는 군기지)으로 직접 신청합니다.

구 분	관할기관	연 락 처
1 인천		전화 : 032-740-2153 팩스 : 032-740-2159
2 김포	서울지방항공청 (항공운항과)	
3 양양		
4 울진		
5 울산		
6 여수	부산지방항공청 (항공운항과)	전화 : 051-974-2154 팩스 : 051-971-1219
7 정선		
8 무안		
9 제주	제주지방항공청 (안전문항과)	전화 : 064-797-1745 팩스 : 064-797-1759
10 광주	광주기지 (계획처)	전화 : 062-940-1110~1 / 팩스 : 062-941-8377
11 사천	사천기지 (계획처)	전화 : 055-850-3111~4 / 팩스 : 055-850-3173
12 김해	김해기지 (작전과)	전화 : 051-979-2300~1 / 팩스 : 051-979-3750
13 원주	원주기지 (작전과)	전화 : 033-730-4221~2 / 팩스 : 033-747-7801
14 수원	수원기지 (계획처)	전화 : 031-220-1014~5 / 팩스 : 031-220-1167
15 대구	대구기지 (작전과)	전화 : 053-989-3211~2 / 팩스 : 064-747-8211
16 서울	서울기지 (작전과)	전화 : 031-720-3230~3 / 팩스 : 031-720-4459
17 예천	예천기지 (계획처)	전화 : 054-650-2017 / 팩스 : 054-650-5757
18 청주	청주기지 (계획처)	전화 : 043-210-2111~2 / 팩스 : 043-210-3747
19 강릉	강릉기지 (계획처)	전화 : 033-649-2021~2 / 팩스 : 033-649-3790
20 충주	충주기지 (작전과)	전화 : 043-849-3084~5 / 팩스 : 043-849-5599
21 해미	서산기지 (작전과)	전화 : 041-689-2020~3 / 팩스 : 041-689-4455
22 성무	성무기지 (작전과)	전화 : 043-290-5230 / 팩스 : 043-297-0479
23 포항	포항기지 (작전과)	전화 : 054-290-6322~3 / 팩스 : 054-291-9281
24 목포	목포기지 (작전과)	전화 : 061-263-4330~1 / 팩스 : 061-263-4754
25 진해	진해기지 (군사시설보호과)	전화 : 055-549-4231~2 / 팩스 : 055-549-4785
26 이천		
27 논산	항공작전사령부 (비행정보반)	전화 : 031-634-2202 (교환) → 3665~6 E-MAIL : avncomd3685@army.mil.kr (발송 후 유선연락)
28 속초		
29 오산	미공군 오산기지	전화 : 0505-784-4222 문의 후 신청
30 군산	군산기지	전화 : 063-470-4422 문의 후 신청
31 평택	미육군 평택기지	전화 : 0503-353-7555 문의 후 신청

② 비행금지구역

구 분	관할기관	연 락 처
1 P73 (서울 도심)	수도방위사령부 (화력과)	전화 : 02-524-3353, 3419, 3359 팩스 : 02-524-2205
2 P518 (휴전선 지역)	합동참모본부 (항공작전과)	전화 : 02-748-3294 팩스 : 02-796-7985
3 P61A (고리원전)		
4 P62A (월성원전)		
5 P63A (한빛원전)	합동참모본부 (공중종심작전과)	전화 : 02-748-3435 팩스 : 02-796-0369
6 P64A (한울원전)		
7 P65A (원자력연구소)		
8 P61B (고리원전)		
9 P62B (월성원전)	부산지방항공청 (항공운항과)	전화 : 051-974-2152 팩스 : 051-971-1219
10 P63B (한빛원전)		
11 P64B (한울원전)		
12 P65B (원자력연구소)	서울지방항공청 (항공안전과)	전화 : 032-740-2153 팩스 : 032-740-2159

③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

- 비행장(군 비행장은 제외한다)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미만의 범위(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)
-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미만의 범위(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)

다. 항공촬영 (인터넷 홈페이지, www.onestop.go.kr/drone 신청가능)

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.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,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.

① 항공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연락처

구 분	연 락 처	FAX번호
서울 (강동, 송파, 서초, 강남, 관악, 동작, 영등포구로, 금천, 양천, 강서)	02-801-6205	02-898-4647
서울 (마포, 울산, 중구, 은평, 서대문, 종로, 강북, 성북, 광진, 동대문, 설동, 노원, 도봉, 종량)	02-380-6204	02-381-2113
강원도 (화천, 순천)	033-249-6213	033-242-8232
강원도 (인제, 양구)	033-460-7701	3corps2210@army.mil.kr
강원도 (고성, 양양, 속초, 동해, 삼척)	033-670-6221	033-671-8031
강원도 (원주, 횡성, 평창, 홍천, 영월, 정선, 태백)	033-741-6204	033-732-5897
광주/전남	062-260-6204	062-264-9830
대전/충남/세종	042-829-6205	044-853-0112
전북	063-640-9250	063-644-8978
충북	043-835-6205	043-835-6979
경남 (진해 제외)	055-259-6204	055-259-6113
대구/경북	053-320-6204~5	053-321-2014
부산/울산/양산	051-730-6205	051-746-6432
파주, 고양, 연천군	031-981-2213	1corps2210@army.mil.kr
포천 (일동면, 이동면), 철원	031-531-0555 교환→2215	5corps2210@army.mil.kr
포천 (일동면, 이동면 제외 전지역), 인천, 동두천, 양주, 의정부	031-530-2214	031-530-1560
남양주(별내면)	031-640-2215	7corps2210@army.mil.kr
김포 (양촌, 대곶면), 인천, 부천	032-510-9204	032-518-8470
안양, 화성, 수원, 평택, 광명, 시흥, 안산, 오산, 군포, 의왕, 과천	031-290-9209	031-294-7746
용인, 이천, 하남, 광주, 성남, 안성, 여주, 양평, 남양주 (별내면 제외 전지역)	031-329-6220	031-339-8083
포항	054-290-3222	054-290-7398
김포 (양촌면, 대곶면 제외 전지역), 강화도	032-454-3222	032-454-3010
제주	064-905-3211	064-905-3008
진해 (부산신항 구역 포함)	055-549-4172~3	055-549-4698

라. 조종자준수사항

-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
-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
-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제한공지역에서 비행하거나 관제통역 · 통제공역 ·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,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드론으로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공역이 아닌곳에서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-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
-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(시험비행 허가시 제외)
- 음주 · 약물복용 상태 및 비정사적인 상태나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
- 항공기, 경량항공기 및 무동력 초경량비행장치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비행
-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밖에서 비행하는 행위(시험비행 허가시 제외)



3. 드론 관련 사업준비 절차

인터넷 홈페이지 (www.onestop.go.kr/drone) 으로도 신청 가능
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(<http://broa.mlit.go.kr>) 참조

가.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절차(서류)안내

① 구비서류

-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.
 - 매매증명서(구매 영수증)
 - 제작자의 경우 제작증명서 또는 제조자증명서
-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를 첨부합니다.
-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(가로 15cm × 세로 10cm의 측면사진)을 첨부합니다.
- ②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의 신고의무
 -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12kg이하의 무인비행장치도 항공기 대여업 ·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용도로 사용 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등록절차(서류) 안내

① 등록신청 구비서류

● 등록신청서 1부

- 별지 제26호 서식 등록신청서 (정부수입인지 1만원,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)
* 전자수입인지 (<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>)

● 사업체, 사업장 및 대표 임원 정보
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, 대표 임원 및 자본금 확인 용도)
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(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)
- 대표 및 임원(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등재) 주민등록번호
 - 항공사업법 제9조(면허의 결격사유 등)에 의하여 대표 및 임원에 대한 면허 결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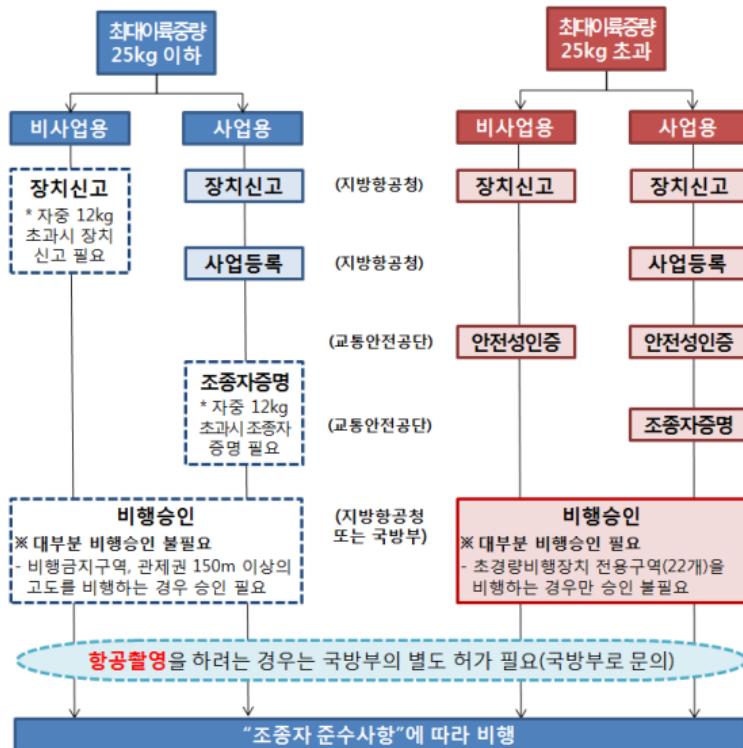
● 별표 63의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

-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의 등록요건

구 분	기 준
1) 자본금	가. 법인 : 납입자본금 3천만 원 이상 나. 개인 : 자산평가액 4천 5백만 원 이상 *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, 자본금 면제
2) 조종자	1명 이상
3) 장치	초경량비행장치(무인비행장치로 한정한다) 1대 이상
4) 보험가입	제3자 보험에 가입할 것 *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1억 5천만 원 이상

- 1) 자본금 증명 :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), 부동산 등기부등본, 은행잔액증명서, 전월세 보증금 등 자산평가액
- 2) 조종자 : 관련자격증 사본 1부
 - 자체무게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조종자 증명 불필요
- 3) 장치 :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(부산지방항공청) 사본 1부
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(교통안전공단) 사본 1부
 -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서 불필요
- 4) 보험증서 사본 1부
 - 사업계획서 1부(시행규칙 제313조 참조)

다. 안전성인증 검사, 조종자증명 요건



라. 관계기관 연락처

-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: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(032-740-2147)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(051-974-2147) 제주제방항공청 안전운항과 (064-797-1743)
- 안전성인증 :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(054-459-7394)
- 조종자증명 :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(054-459-7414)
- 비행승인 :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(032-740-2153)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(051-974-2154)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(064-797-1745)
- 공역관련 :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(032-740-2185)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(051-974-2206)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(064-797-1764)
- 국방부 : 콜센터 1577-9090, 대표전화(교환실) 02-748-1111, 수도방위사령부 (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) 02-524-3413보안암호정책과(항공촬영 허가 관련) 02-748-2344

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

-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: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, 강원도, 대전광역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, 세종특별자치시, 전라북도
-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경상남도, 경상북도, 전라남도
-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: 제주특별자치도



반부패/청렴 공직문화 확립

부산지방항공청은 공직자의 업무관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우리사회의 청렴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우리청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 및 각종 편의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홈페이지 : 부산지방항공청 (braa.molit.go.kr) 국민마당
전화 : 부산지방항공청 청렴전담반 (051-974-2120)